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드명	BNK튼튼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정정서류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사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직판 클래스 삭제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29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u>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아니하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요약정보]			
표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이며, (현행과 동일)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클래스 삭제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직접판매(J-e)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			
표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현행과 동일)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클래스 삭제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J-e)	<삭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직판 클래스 삭제	- Class J-e - Class J-Pe - Class J-P2e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직판 클래스 삭제	- Class J-e	<삭제>

명칭	제	- Class J-Pe - Class J-P2e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4.10.29: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직판 클래스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클래스 삭제	가. (생략)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 (Class)</th><th>가입자격</th></tr><tr><td>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td></tr><tr><td>S-P</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	종류 (Class)	가입자격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가. (현행과 동일)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 (Class)</th><th>가입자격</th></tr><tr><td>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td></tr><tr><td>S-P</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td></tr></table>	종류 (Class)	가입자격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
종류 (Class)	가입자격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lass)	가입자격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														

							의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수수료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J-e	<삭제>										
		J-P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e	<삭제>										
		J-P2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2e	<삭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생략) 가. ~ 다. (생략)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정정 전>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현행과 동일)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정정 후>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가. 매입 (1) (생략) (2) 종류별 가입자격		가. 매입 (1) (현행과 동일)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d>종류</td><td>가입자격</td></tr><tr><td></td><td></td></tr></table>	종류	가입자격			<table><tr><td>종류</td><td>가입자격</td></tr><tr><td></td><td></td></tr></table>	종류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반영, 직판클래스 삭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Class)		(Class)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	S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u>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S-P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u>
	J-e	<u>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J-e	<삭제>

		<table><tr><td>J-Pe</td><td>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td></tr><tr><td>J-P2e</td><td>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td></tr></table> (3)~(4) (생략) 나. 환매 (1) ~ (9) (생략) (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신설> <table><tr><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td><td>중도환매 허용</td></tr><tr><td>○</td><td>○</td><td>○</td></tr></table> 다. 전환 (생략)	J-P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2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table><tr><td>J-Pe</td><td><삭제></td></tr><tr><td>J-P2e</td><td><삭제></td></tr></table> (3)~(4) (현행과 동일) 나. 환매 (1) ~ (9) (현행과 동일) (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table><tr><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td><td>중도환매 허용</td></tr><tr><td>○</td><td>○</td><td>○</td></tr></table> 다. 전환 (현행과 동일)	J-Pe	<삭제>	J-P2e	<삭제>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J-P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2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J-Pe	<삭제>																						
J-P2e	<삭제>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직판클래스 삭제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tr><td>종류 (Class)</td><td>가입자격</td></tr></table>	종류 (Class)	가입자격	<table><tr><td>종류 (Class)</td><td>가입자격</td></tr></table>	종류 (Class)	가입자격																
종류 (Class)	가입자격																						
종류 (Class)	가입자격																						

		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u>	S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u>
		S-P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S-P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u>
		J-e	<u>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J-e	<삭제>
		J-Pe	<u>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u>	J-Pe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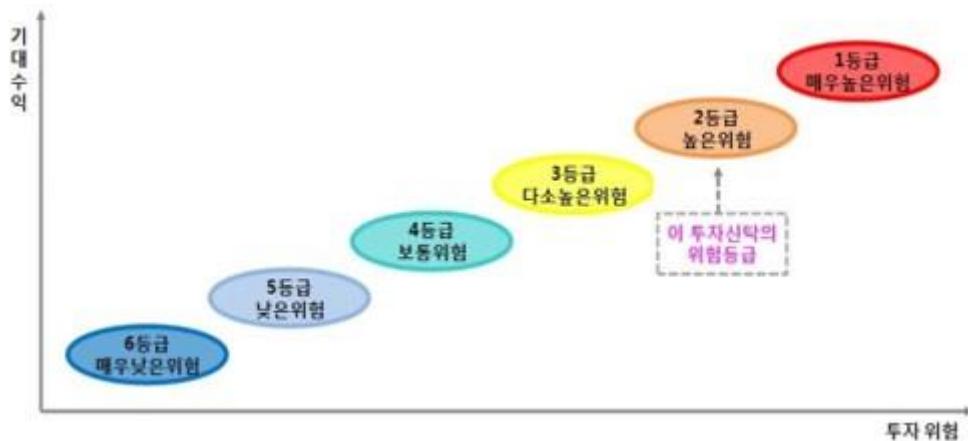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2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J-P2e <삭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Class J-e, J-Pe, J-P2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Class J-e, J-Pe, J-P2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삭제>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삭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직판클래스 삭제	가. (생략) 나. 과세 (1) ~ (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u>Class C-P, S-P, C-Pe 및 J-Pe 가입자</u> - 분리과세한도: <u>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u>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u>Class C-P2, C-P2e 및 J-P2e 가입자</u>	가. (현행과 동일) 나. 과세 (1) ~ (3) (현행과 동일)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u>Class C-P, S-P, C-Pe 가입자</u> - 분리과세한도: <u>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u> <u>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u>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u>Class C-P2, C-P2e 가입자</u>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Class J-e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기 재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

운용실적(세전 기준)	무제표 확정		으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으로 업데이트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4.10.11 기준으로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주소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가. ~ 다. (생략) 라. (1)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2)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1)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75 (2) (현행과 동일)

<정정 전>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15.1652%**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2023.10.01)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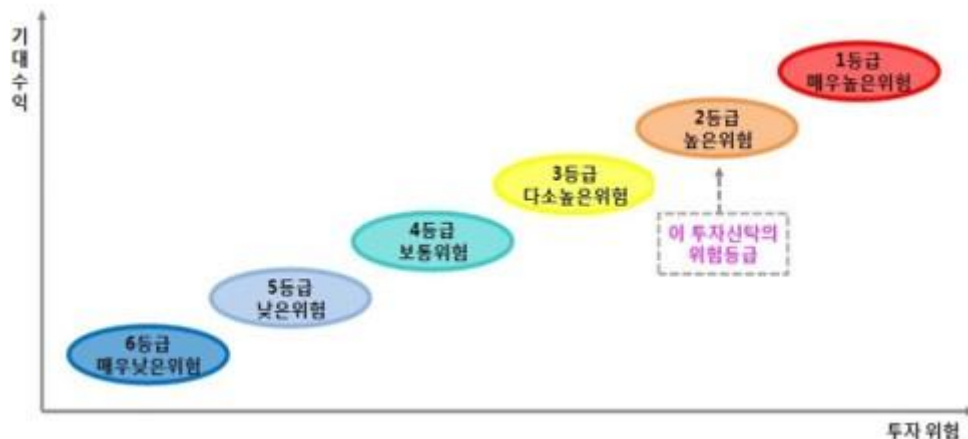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2017.10.25	3등급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9.86%
2019.11.08	4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0.08%
2020.10.30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8.0765%

<정정 후>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32.7891%**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2024.10.01)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기준(97.5% Var 모형 사용)]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 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3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2017.10.25	3등급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9.86%
2019.11.08	4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0.08%
2020.10.30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적용 - 수익률 변동성 : 18.0765%

<끝>.